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18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8.(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 
원안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설과장 이병인)

가. 제안이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신설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한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신설에 따른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를 전문개정
- 현행조례는 당해연도 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, 그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
- 개정조례는 매년 적립된(발생이자 포함) 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,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재해대책 적립기금방식을
  - 현행 당해년도 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토록 되어있는 기존방식을
  - 매년 적립된(발생이자포함) 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예치토록 변경하여 관리하므로써
-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재해예방은 물론 피해최소화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신설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